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5425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10. 29 선고 2023나54252 판결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1. 12 선고 2022가단116759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유병일, 남지혜

피고, 항소인 A

변론 종결 2024. 8. 27.

판결 선고 2024. 10. 29.

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. 1. 12. 선고 2022가단116759 판결

주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

1. 청구 취지

피고와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811분의 165 지분에 관한 2018. 10. 10. 자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2021. 10. 21. 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. 피고는 B(주민등록번호 1 생략)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811분의 165 지분에 관하여,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8. 10. 10. 접수 제1172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21. 10. 22. 접수 제1523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'2. 고치는 부분'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2, 13행을 삭제한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김범준

판사진희원

판사이형우

별지